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51-1178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주택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최초 당첨자발표일(2025.12.16.(화))로부터 3년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없음	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청약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11.28.(금)	2026.01.16.(금)	2026.01.21.(수)	2026.01.26.(월)	2026.01.29.(목) ~ 2026.01.30.(금)	2026.02.01.(일)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5.12.16.(화))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4~20층 4개동 총 480세대 중 잔여 4세대
- 입주시기 : 2029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잔여세대 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6910010	01	061.9953	61	4	604	105, 501
					605	203, 204

■ 공급금액 표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타입)	공급 세대수	동호구분	층별 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 (5%)		중도금 (60%)						잔금 (35%)
								1차	2차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시	계약일 30일 이내	2026-06-10	2026-12-10	2027-06-10	2027-11-10	2028-04-10	2028-09-10	입주지정기간
61	4	604,605동 1,3,4,5호라인	1층	1	163,930,000	253,170,000	417,100,000	10,000,000	10,855,000	41,710,000	41,710,000	41,710,000	41,710,000	41,710,000	41,710,000	145,985,000
			2층	2	163,930,000	264,770,000	428,700,000	10,000,000	11,435,000	42,870,000	42,870,000	42,870,000	42,870,000	42,870,000	42,870,000	150,045,000
			5층	1	163,930,000	285,570,000	449,500,000	10,000,000	12,475,000	44,950,000	44,950,000	44,950,000	44,950,000	44,950,000	44,950,000	157,325,000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인지세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있음.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상기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대출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1.26.(월) ~ 2026.02.04.(수) (10일간)
문자	- 제공일시 : 2026.01.26.(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당첨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 발급용에 한함/대리인 발급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으로 대체(대리인 위임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당첨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본인 외 모두 제3자)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당첨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에 한함, 대리인 발급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인 위임 불가
		○	위임장	본인 (당첨자)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제출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026.02.01.(일) 10:00 ~ 17:0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해당서류	비고
공통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분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제3자 대리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계약금 입금 영수증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공통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아파트 계약위임용 (계약자 본인발급분에 한함)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7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며,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권리의무승계 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공급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_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 구매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 10억원 초과(35만원)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단지 명칭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으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세대당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임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시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지번기준 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공급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가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합니다.

■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공급대금 납부계좌	광주은행	1107-021-911026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지사

■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구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광주은행	1107-021-911076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지사

- ※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 공급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예시:501동 201호를 계약한 홍길동→501-201홍길동)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관련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가능날짜는 별도 통보 예정임.
-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공급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음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 수납계좌가 변경될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서 상의 수분양자 주소로 해당 내용을 우편통지할 예정이며, 우편통지 도달과 관련한 사항은 다룰 수 없음.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일정은 사업주체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 알선조건은 ‘중도금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공급대금에 60%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 및 조건에 따라, 중도금대출을 알선할 예정임. 단,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이자후불제’ 조건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가능하나, 정부의 관련정책,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한도축소 등의 사유로 인해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고,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조달하여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 및 대출취급상품을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됨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 제한, 보증서 발급제한 등) 등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특히 청약 접수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대출취급상품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대출에 필요한 중도금 대출관련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관련 보증서의 발급가능 여부에 따라 대출알선조건이 변경 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 보증요건 강화에 따라 대출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에 의해 입주시점의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원리금 상환조건 등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업주체는 대출기관과 협약 후 계약자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대출알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공급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진행에 따라 모집공고에 기재된 중도금 납부 약정일자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에 공급계약해지 요구, 중도금 대출 신청 거부, 발코니확장비 및 추가선택품목 대금 납부 거부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신청 및 기표 일정이 공급대금의 각 납부회차 이후일지라도 이전 회차의 공급대금까지 함께 기표하여야 함.
 - 대출은행과의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정보제공 미동의에 따른 대출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에 책임지지 않음.)
 -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금융기관에서 요청한 서류를 미제출 시 사업주체는 대출을 알선하지 않음.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사업주체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불가의 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알선은 확정이 아니며, 중도금 대출알선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 자력으로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 분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 I	시공사 II
상 호	한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모아주택산업	주식회사 로제비앙건설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73,4층(치평동)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73,5층(치평동)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57-3(마북동)
법인등록번호	204411-0005748	200111-0007570	200111-0245055
대표번호	062-606-1064	062-606-1000	062-362-8430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시흥거모-엘가로제비앙.com>)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건본주택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4-2번지

■ 분양 문의 : 1551-1178